

부천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
(2004년 3월 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문병섭)

□ 제안이유

-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곧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(2002. 2. 4 법률 제6653호)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맞추어 시행일을 정하고,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한 실적은 ? • 지난 회기시 동 조례를 처리하면서상정은 “2005. 1. 1일부터 시행한다.” 는 경과조치를 두고 수정의결한 것은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같은 안전을 다시 제출한 사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회 있음. •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규정은 2003. 1.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“부천시조례에는 2005. 1. 1일부터 시행한다.”라는 경과조치는 상위법에 위반되어 다시 제출한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6호
의결 년월일	2004. 3. 19 (제111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3. 4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(2002. 2. 4, 법률 제 6653호)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시행일을 정하고,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004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	부 칙
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삭 제></p>